

곤자가 국제학사 게스트룸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8.12.26.

개정 2020.01.21.

개정 2022.05.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국제학사”) 내에 위치한 게스트룸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스트룸의 목적) 게스트룸은 국제학사의 일반사실(학생룸)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서강대학교에서의 활동을 위해 학사 내 거주가 필요한 이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번역) 시행세칙은 한국어로 작성된 후 학사의 외국어 공지언어로 번역된다. 따라서 외국어로 번역된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입 사

제4조 (입사자격) ① 서강대학교 교원, 직원, 초빙·교환·방문교수, 연구원(방문연구원)은 국제학사 게스트룸에 입사할 수 있다.

② 학사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게스트룸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구와 강연 등을 목적으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후 입사신청을 한 자
2. 대학원생 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입사신청을 한 자
3. 서강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학사장이 허가한 자

제5조 (입사신청) ① 게스트룸 입사신청은 입사희망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국제학사 행정실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서강대학교 산하 기관의 초청에 따라 게스트룸 입사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③ 게스트룸은 일부 호실에 한하여 위탁운영사를 통해 입사 신청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5.18.>

제6조 (입사승인) ① 학사장은 입사 승인을 받은 거주 예정자에게 필요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감염병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5.18.>

② 입사승인을 받은 모든 게스트룸 입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게스트룸 입사를 희망하는 기간에 공실이 없는 경우
2. 강제퇴사 된 이후 학사장으로부터 입사금지 해제를 받지 못한 경우
3. 서강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학사장이 입사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제7조 (거주 기간 및 재승인) ① 게스트룸에 거주 가능한 기간은 최장 1년이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매번 입사신청과 학사장 승인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 인원, 거주 기간, 객실 타입(원룸, 중형룸, 대형룸)의 변경에 따라 거주 예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제8조 (객실배정) ① 객실배정 시 거주자의 특정 선호도(호실 및 층 위치 등)는 보장되지 않는다.

② 거주자는 배정된 객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학사장은 거주자에게 기배정된 객실을 학사 운영상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퇴 사

제9조 (퇴사) ① 학사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경우, 거주 기간 동안 졸업과 퇴직 등의 사유로 게스트룸 거주 자격이 상실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4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 ② 퇴사는 국제 학사 행정실의 근무시간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③ 퇴사 시 출입증을 행정실에 반납해야 한다.
- ④ 퇴사 시 객실의 상태는 입사 시 객실의 상태와 동일해야 한다.

제10조 (중도퇴사) ① 거주 계약 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퇴사를 중도퇴사라 한다.

- ②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신청서를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학사장의 권고로 중도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 학사장과 서강대학교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 혹은 자해의 위험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예: 상담거부, 치료거부 등) 자살 혹은 자해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아서 주변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추가방역사유(감염병 발생, 빈대 발생 등)가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의 추가방역조치와 학사장의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거주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1조 (강제퇴사) ① 학사장은 규정 위반, 타 거주자의 권리 침해, 교육 환경 조성의 저해, 공동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면 관련 거주자를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

- ② 해당 거주자는 강제퇴사 조치 이전에 곧자가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③ 상벌위원회를 통한 학사장의 결정(예: 강제퇴사일)은 14일 이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사장은 관련 거주자의 사정과 사안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④ 학사장에 의하여 강제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학사 내에서 사용이나 보관이 금지된 물품을 사용했거나 보관한 자
 2. 학사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외부인 무단출입, 외부인 무단숙박 등 학사 내 출입규정을 어긴 자
 4.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 외부인 방문은 방문자 확인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무단출입이나 무단침입으로 간주된다.

- ⑤ 학사 내에서 사용이나 보관이 금지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술
 2. 향정신성 의약품(마약 등)
 3. 무기(武器)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
 4. 게스트룸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전열기구(다리미, 전기장판, 온풍기 등)

5.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물질(양초, 가스, 화약 등)
 6. 애완동물
 7. 큰 전력이 소모되는 전기제품
 8. 학사장이 전체 공지를 통하여 보관이나 사용을 금지한 품목 (예: 공유기 등)
 9. 총기, 마약 등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는 모든 물품
- ⑥ 학사 내에서 금지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음주
 2. 흡연
 3.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 소란 혹은 난동
 4. 기숙사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
 5. 도박, 마약투여 등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

제4장 거주 비용

제12조 (거주 비용) ① 게스트룸 거주 비용에는 숙박비, 청소비, 침구류 대여료, 비품의 손망실 비용, 직계 가족의 숙박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다.

② 모든 게스트룸 거주자는 숙박비를 납부해야 한다. 숙박비는 일할로 계산한다. 숙박비에는 물, 전기, 인터넷사용료, 기타 공용공간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숙박비 단가는 매년 기숙사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춘계학기 시작과 함께 숙박비 단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③ 모든 게스트룸 거주자는 퇴사에 따른 청소비를 납부해야 한다. 게스트룸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는 거주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업체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한다.

④ 원칙적으로 국제학사는 침구류를 대여하지 않는다. 단, 단기 거주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침구류 세탁에 필요한 실비를 거주자가 부담한 후 대여할 수 있다.

⑤ 퇴사 시 확인된 비품의 손망실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한다. 입사 시 제출한 비품 목록과 비교하여 손망실 여부가 판단된다.

⑥ 직계 가족이 거주자와 함께 숙박하려면 학사장 승인 후 게스트룸 타입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원룸의 경우, 30%의 추가 숙박비를 납부해야 하고, 중형룸과 대형룸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면제된다.

제12조의1(입사보증금 제도) ①제5조 제3항에 의한 신청은 신규 입사자로 학사장의 승인을 받은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리 정한 거주비용의 일부를

입사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5.18.>

제13조 (비용납부방법) ① 한 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숙박비 분납이 가능하며 선납이 원칙이다. 퇴사일에 비용정산을 한다.

② 한 달 미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총 거주 기간에 대한 숙박비를 입사 이전에 완납해야 한다. 퇴사일에 비용정산을 한다.

③ 청소비는 입사 시 1회 청구된다.

④ 침구류 대여료는 입사 시 실비로 납부한다.

⑤ 비품의 손상실 비용은 퇴사 시 실비로 구상한다.

제5장 환불 정책

제14조 (입사취소에 따른 환불) ① 입사일 전날까지 입사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납부한 거주 비용 전액(제12조의1에 따른 입사보증금 포함)을 환불한다. <개정 2022.05.18.>

② 입사 당일 입사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숙박비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후 환불한다.

제15조 (중도퇴사나 강제퇴사에 따른 환불) ① 중도퇴사나 강제퇴사가 이루어지면 잔여 숙박비 중에서 입사 시 거주자가 동의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잔여 숙박비가 입사 시 거주자가 동의한 위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여 숙박비만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의1(보증금 환불) 제12조의1에 의한 보증금은 퇴사 후 전액 환불한다. 다만,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 1개월 전에 퇴사일을 국제학사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8.>

제6장 관리 행정

제16조 (시설점검) ① 국제학사는 게스트룸의 전반적인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대정비기간을 가질 수 있고, 학사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게스트룸 거주자는 이 기간 동안 학사에 거주할 수 없다.

② 대정비기간처럼 게스트룸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은 거주자에게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 ③ 국제학사는 매 학기 게스트룸을 대상으로 학사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다.
- ④ 게스트룸 거주자의 퇴사 이후에 국제학사는 해당 게스트룸에 대한 청소와 소독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7조 (출입카드) ① 게스트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사장 혹은 학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출입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입증 분실 시 행정실에 신고해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입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부인 방문) ① 게스트룸 방문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 사이에 가능하다. 방문자는 거주자와 동행해야 하며, 보안데스크에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카드를 수령한 후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0.01.21.>

제19조 (외부인 숙박) ① 외부인은 게스트룸에 숙박할 수 없다.

② 게스트룸 거주자의 직계가족과 방문객은 학사장의 사전 승인 후 해당 게스트룸에 숙박할 수 있다.

③ 기준 거주 인원은 게스트 원룸의 경우에 1인, 중형룸의 경우엔 2인, 대형룸의 경우엔 4인이며, 추가 거주 허용이 가능한 인원은 각 1인이다.

④ 사전 승인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사장은 외부인 숙박을 승인할 수 있고, 학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인이 숙박한 경우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된다. <개정 2020.01.21.>

제20조 (사실 출입규정) ① 게스트룸 거주자는 국제학사의 일반사실이 있는 층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② 시설점검을 목적으로 “부재 중 입실 허가”를 게스트룸 거주자에게 받은 경우, 관계 직원은 거주자의 부재 중 게스트룸에 출입할 수 있다. 단, 출입 관련 메모(일시, 출입직원 이름, 출입목적과 업무내용)를 남겨야 한다.

③ 타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예: 누수, 누전,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부재 중 입실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게스트룸 거주자에게 출입 통보를 한 이후에 관계 직원이 출입할 수 있다. 만일, 거주자에게 출입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전에 학사장에게 사전 공지되어야 하고, 출입 후에 거주자에게 메모(일시, 출입직원 이름, 출입목적과 업무내용)를 남겨야 한다.

④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직원의 출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사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곤자가 위원회

제21조 (곤자가 운영위원회) ① 곤자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세칙은 『곤자가 국제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0.01.21.>

제22조 (곤자가 상벌위원회) ① 곤자가 상벌위원회와 관련된 세칙은 『곤자가 국제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0.01.21.>

② 게스트룸 거주자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은 『곤자가 국제학사 게스트룸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0.01.21.>

제8장 시행세칙의 개정

제23조 (세칙 개정) ① 국제학사 학사장은 시행세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세칙은 기숙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다.

부 칙 (2018.12.26.)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21.)

이 시행세칙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5.18.)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